

持續可能한 成長

李 善 龍*

〈目 次〉

I. 서 설	4. 後續措置를 위한 요청
II. WCED 報告書： 「Our Common Future」	III. WCED 報告書의 의의 및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
1. 持續可能한 成長과 바람직 한 國際經濟關係	1. 의의와 특성
2. 人類의 共同當面課題	2. 비판
3. 人類의 共同對處方案	IV. 우리나라의 입장과 對處方案

I. 서 설

20세기를 되돌아볼 때 人類와 人類가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더전인 地球와의 관계는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는 地球生態界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나, 세기말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류가 행하는 활동들은 地球生態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동식물을 포함하는 생태계 및 대기, 수질, 토양 등 모든 부문의 地球生態界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위협으로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처해야 할 政治的인 體制나 國際經濟協力機構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망스럽게도, 뚜렷한 성과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 前 環境處 법무담당관 · 미국 인디아나대학 환경영정책 박사과정 수학중.

우리의 현실이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드높아오게 된 것이다. 즉, 현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또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해 각국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국가간에는 서로 어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한 요구가 점증되어 온 것이다.

이에 1983년 UN 총회에서는 ‘環境과 成長에 관한 國際委員會(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기구에게 현재까지의 제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지구상에서 계속 증가해 왔으며, 또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 세계 인구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토록 위임한 것이다.

이 기구는 현재 노르웨이 수상이고 당시 환경부 장관이던 Gro Harlem Brundtland여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세계 각 지역의 21개 국가의 각료, 정치인, 교수, 학자들로 구성되어 약 3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세계 각 지역의 의견을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는 한편, 공식적인 공청회 및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1987년 4월에 영국에서 ‘우리의 共同未來(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그 해 가을에 개최된 제42차 UN 총회의 한 특별전권회의(Special Plenary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에 제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UN 총회에서는 특히 소속 산하기구 및 국제금융기구들을 대상으로하여 광범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¹⁾

이에 관련하여 UNEP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과 정신을 수용하여, 같은 해 12월에 ‘2000년대이후의 環境問題 認識方向(Environmental Perspective to the Year 2000 and Beyond)’이라는 제명하의 공식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 총회 결의안(42／186)으로 확정시키게 된다. WCED의 성격이 한시적이었고, 1987년

1) Gregory G Label & Hal Kane(1989), *Sustainable Development : A Guide to Our Common Future*, Paris : The Center for Our Common Future, p. 72.

12월 31일로 그 공식적인 활동을 마쳤으므로, 후속조치는 UN의 공식 산하기구인 UNEP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UNEP의 보고서가 행동지침들을 나열하고 있는 정도의 간략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UNEP의 사무총장인 Tolba도 ‘UNEP의 보고서가 WCED의 많은 내용과 정신을 받아 드렸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바, 혼히 Brundtland 보고서라고 지칭되는 WCED의 보고서의 기본정신과 주요입장, 그리고 그들의 권고안을 분석해 보는 것은, 1992년 6월 5일 世界環境의 날에 맞추어 Stockholm인간환경선언 20주년 기념으로 2주일간 개최되는 UN의 ‘環境과 成長에 관한 1992년 세계회의(The United Nations 1992 Glob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대비하여 EC를 비롯한 21개 국가들이 1989년 3월까지, 각국의 지속적인 成長政策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진척사항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식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뜻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WCED報告書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해결방안을 분석한 후, 이 報告書가 가지는 의미 및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에 대처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준거로 삼고자 한다.

II. WCED報告書：「Our Common Future」

WCED의 보고서는 약 40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의 보고서로서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에서는 인류 공동 관심사를 대상으로 하여,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未來(제1장), 지속가능한 成長(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가는 길(제2장), 국제경제의 역할(제3장)을 다루면서, ‘지속가능한 成長’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성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선행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좀 더 평등한 세계 경제질서에로의 재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인류 共同의 課題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구의 증가 및 인적 資源의 문제(제4장), 식량문제(제5장), 種(species) 및 생태계 보전(제6장), 에너지 문제(제7장), 產業構造 및 생산성의 문제(제8장), 都市化에 따른 문제점(제9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보는 이러한 과제들의 원인을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인류 공동의 대처방안으로서 海洋, 極地域, 宇宙 등 人類共同資產(commons)의 효율적 관리(제10장), 평화, 방위, 성장과 환경의 조화(제11장), 그리고 공동노력(common action)으로서 기구의 개편 및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1. 持續可能한 成長과 바람직한 國際經濟關係

모든 국가는 지구상의 환경자원을 소모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러한 資源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절약하고 관리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의식 및 정책방향의 전환을 위해서는, 첫째, 각국은 모든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에 있어서 持續可能한 成長의 개념을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둘째, 국가간의 협력체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롭고도 좀 더 평등한 국제경제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두가지의 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국력과 자원보유에 있어서의 현격한 격차가 결국은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환경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成長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²⁾

(1) ‘持續可能한 成長(sustainable development)’의 의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를 불문하고,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은 지속가능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위에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持續可能한 成長’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후손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우리 스스로의

2) WCED(1987), *Our Common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6.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을 의미한다.³⁾ 이러한 바람직한 成長의 개념에 기초하여 지구상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특히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첫째, 衣·食·住에 대한 기본적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의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요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과제인데, 특히 세계 각국의 빈곤층이 겪고 있는 광범위한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둘째로, 成長에의 限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 및 사회체제의 현재 수준, 그리고 이러한 현재 수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環境資源의 활용 및 인간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산물로서의 廢棄物의 정화능력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인 바, 과학,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체제가 잘 발전된다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시대를 여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持續可能한 成長'의 목표

지구상의 자원고갈의 문제나 환경파괴의 문제의 대부분이 세계 각국간의 경제력과 정치력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이 오늘날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持續可能한 成長은 오직 이 지구가 관리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持續可能한 成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국의 경제적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달성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성장이 기초를 두고 있는 환경자원을 개선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원의 활용, 투자방향, 기술개발의 방향, 그리고 사회구조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의 욕구와 소망을 충족시키는 현재와 장래의 잠재력을 높히는 動的의 變化過程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⁴⁾

변화과정으로서의 성장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욕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WCED는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주요 目標로서

3) WCED(1987), p. 43.

4) WCED(1987), p. 46.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⁵⁾

- 成長의 復活
- 성장의 내용 및 質의 변화
- 직업, 식량, 에너지, 물, 위생 등 基本欲求의 충족
- 지속가능한 人口水準의 유지
- 環境資源基盤의 보호 및 증대
- 기술의 방향 재정립 및 위험성 관리
-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환경 및 경제의 조화

(3) 持續可能한 成長을 위한 제반 與件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효율적이고도,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첫째, 政治體制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住民參與(citizen participation)을 보장해야 하고,

둘째, 經濟體制는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잉여물을 산출하고, 기술축적을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셋째, 社會體制는 불균형성장의 결과로 제기되는 긴장과 마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生產體制는 성장을 위해서는 생태계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섯째, 科學·技術體制는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섯째, 國際協力體制는 지속가능한 교역과 자본공급의 패턴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끝으로, 行政體制는 부단히 스스로의 취약점을 개선해 가는 능력과 유연성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⁶⁾

5) WCED(1987), p. 49.

6) WCED(1987), p. 65.

이러한 제반여건이 전세계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것은, 새롭고도, 좀 더 평등한 世界經濟秩序의 확립이라고 할 것이다.

(4) 평등한 世界經濟秩序의 확립

국가간의 交易과 지속가능한 成長과의 주요한 연계점은 再生不可能한 천연자원(non-renewable raw materials)이나 환경자원을 수출해야만 하는 것이 성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들여 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 있다. 開發途上國들은 성장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얻어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필수품류를 수출하여 확보된 외화로 이자, 상환금에 충당해야 하는 동시에,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한 환경자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⁷⁾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자원고갈에 대한 댓가로서의 환경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수출함으로써, 주요 수입국인 부유한 선진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온 결과를 놓게 된 것이다.⁸⁾

더구나 先進國들에게서의 保護貿易主義의 팽배는 제3세계의 국가들의 수출 중대 의욕을 꺾음으로써 외채를 칭산하고 경제를 다각화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억제시켜온 것이 사실인 것이다. 국제교역시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고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개선시킬 수 없는 開發途上國들은 점증하고 있는 환경상 피해의 보이지 않는 댓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 또한 開發途上國의 노후된 생산공정은 환경파괴를 부채질 해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WCED는 이 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GATT나 UNCTAD와 같은 多國間 交易協議機構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본정신을 반영하도록 할 것,

둘째, OECD에 의해 마련되었거나 UN의 기구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多國籍

7) WCED(1987), p. 79.

8) WCED(1987), p. 81.

企業(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행동지침서들을 환경상의 문제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등을 포함시키도록 확대, 개정할 것.

셋째, 제3세계의 국가들이 1980년에 기술사용료로 지불한 액수가 200억불인 반면 전세계 특허의 6%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이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그들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⁹⁾

2. 人類의 共同當面課題

(1) 人口의 증가 및 保健, 教育 등 人的資源 管理問題

모든 국가에서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의 人口政策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우선 인구의 증가를 억제해야 하고,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원의 고갈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1인당 생산성 및 생산 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자원을 절약, 활용하여 이를 통한 노후안정을 피하는 것이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 노후안정대책으로 삼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므로써 인구의 고른 연령분포 및 지역적 분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¹⁰⁾

WCED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모두를 위한 健康(Health for All)’ 전략은 단순히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공급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모든 개발행위에 수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을 검토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의 시발점은 산모와 소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보건, 의료 시설의 우선적인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¹¹⁾

세계 인구 중의 文盲率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절대적 숫자는

9) WCED(1987), p. 88.

10) WCED(1987), pp. 95~96.

11) WCED(1987), p. 1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세기말에는 문맹자들의 숫자가 약 9억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오직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教育의 質도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경작에 참여하는 현실에 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제도를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각 지역의 자원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학교에서는 그 지역의 토양, 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보전, 산림의 황폐화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각 개인이 어떻게 그러한 환경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¹²⁾

(2) 食糧確保의 문제

세기말까지 증가될 약 11억의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3~4 %의 食糧增產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세계의 국가들은 농작물의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농업부문의 기반을 확충하고 유통구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민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과감한 농지개혁, 영농의 기계화, 종합적 농촌개발계획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별 水資源의 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므로써, 성공적인 灌溉 및 水利事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학비료 및 제초제의 과다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국은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확대시키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진국에서도 화학 제초제나 농약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魚族資源의 포획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민물에서나 연안에서의 양식어업의 확충만이 野生 魚族資源을 유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¹³⁾

12) WCED(1987), p. 113.

13) WCED(1987), pp. 137~8.

(3) 野生種子와 生態界 保全

지구상에서 멸종되고 있는 野生種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양한 種의 존재는 정상적인 생태계의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野生種子는 개량종의 개발, 새로운 약품 및 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생산원료로서 산업활동 등에 사용되어,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을 떠나서 野生種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倫理的, 문화적, 異美的, 그리고 순수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WCED는 국제 해양법이나 다른 국제협약과 같은 형식의 ‘野生種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제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종의 보호를 위한 國際協約의 개괄적인 초안이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Natural Resources)에 의해 마련되었으나,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한 각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UN에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각국의 기부금을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이러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 나라들 즉, 야생종의 遺傳因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진국들은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分擔金을 출연해야 할 것이다.¹⁴⁾

(4) 에너지 문제

안전하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WCED는 에너지의 效率性을 높히고 새로운 고갈되지 않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火石燃料(fossil fuels)의 사용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온실효과, 대기오염, 산성비 등과 같은 환경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21세기에 접어들어도 마땅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原子力 발전에 따르는 안전성 문제, 폐기물의 처리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한

14) WCED(1987), p. 162.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서만 原子力 발전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 WCED의 일치된 의견이므로, 관심의 촛점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생태적으로도 건전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모아져 있다.¹⁵⁾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고갈되지 않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가능할 때까지는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것만이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節約하도록 유도하는 價格政策의 수립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비교, 평가할 수는 없어도, 각국 정부가 여러 대안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교하여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價格政策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원유가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유의 수요자와 생산자간의 직접대화를 전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실로 인류의 발전을 먼 미래에 까지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안전하고 환경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인데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인 의지와 각 기관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¹⁶⁾

(5) 產業活動과 生產性의 제고

최근 세계의 생산고는 1950년에 비해 약 7배로 늘어났다. 현재와 같은 인구 증가율이 계속된다면, 개발도상국의 소비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으로 증가된다고 가정할 때, 세기말까지 약 5~10배의 생산량증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과거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나타났듯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은 그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건강, 재산, 그리고 환경상의 피해를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실제로 많은 생산업체들이 이러한 기술의 채택을 통해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OECD가 1984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汚染規制에 사용되는 비용이 투자를

15) WCED(1987), p. 189.

16) WCED(1987), p. 15.

억제하여 고용을 줄이거나 대외 경쟁력과 수출을 줄이기는 커녕, 이러한 비용이 창출하는 구매력의 증가로 최대조업율을 밀들던 經濟生產庫를 높혀서 成長과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단기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¹⁷⁾

산업체들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비효율적인 生產工程때문에 나타나는 副產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산업체들이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자신들의 생산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생산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의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의 이러한 工程改善을 위한 經濟的인 誘導策(economic incentives)을 제공한다면 짧은 시간안에 기업의 혁자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우선 環境基準을 설정하고 환경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경제적 誘導策을 마련하며 각 각 생산시설의 污染排出基準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OECD의 선진국들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污染者負擔原則(Polluters Pay Principle)'을 채택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원칙적으로 생산 원가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¹⁸⁾ 이러한 방법외에도,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유형의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開發途上國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규제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공해산업과 자원소모가 많은 산업체가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하게 늘고 있어 개도국 정부는 조속히 환경 및 자원의 관리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래 사업계획이나 생산제품 별로 시행되어 오던 環境影響評價의 대상 범위를 넓혀서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경제정책, 재정계획, 그리고 각 분야별 시책에까지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¹⁹⁾ 특히 아시아나 남미지역의 많은 개도국들이 環境影響評價制度를 도입, 시행하고는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

17) WCED(1987), p. 211.

18) WCED(1987), p. 221.

19) WCED(1987), p. 222.

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의 권한부여나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영향평가가 외부의 용역인(consultant)을 통해 그 자질과 보고서의 질에 대한 검토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형식적 검토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용역인들에 의해 제출된 평가서를 심도있게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檢討·確認制度(system of checks and balances)’를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심있는 정부들은 독립적인 국제평가기관을 설치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에 대한 영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도움과 조언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⁰⁾

國境을 넘어서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規制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WCED는 국경을 넘는 汚染物質(trans-boundary pollution) 규제나 共有資源管理(management of shared natural resources)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첫째, 각국은 다른 나라에게 건강과 환경상의 被害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 둘째, 국경을 넘어 들어간 汚染物質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責任을 지고 賠償하여야 하며,
- 셋째, 관계 당사국들은 모든 복구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6) 都市化의 과제들

開發途上國의 지방정부들은 급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토지, 서비스 및 깨끗한 물, 소득, 학교, 교통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 자원, 그리고 훈련된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원시적인 기반시설에 독버섯처럼 불법거주자들이 들끓게 되고, 어디를 가나 북적거리게 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다. 先進國의 많은 도시들도 도시기반시설의 악화, 환경오염, 都心空洞化, 그리고 이웃관계의 몰락과 같은 문제점들에 당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을 위한

20) WCED(1987), p. 222.

수단이나 재원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가능한 문제이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같은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도시화의 붕괴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²¹⁾

각국의 정부들은 각자의 특수한 필요성에 따라 都市開發計劃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권과 중도시권, 그리고 소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리지 않고 中小都市로 흡수되도록 하는 한편, 中小都市의 경제개발에 정부정책의 중점을 두어 체계적이고도 균형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都市管理政策에는 자금, 정치적 권한, 그리고 유능한 인력을, 지역적인 요구사항을 가장 잘 관리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방정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분권화 작업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3세계의 국가들은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개발기구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지원기구들이 지원한 거주지나 주변지역의 개발혜택을 받은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는 전체 도시인구의 5%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각 개발지원 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 첫째, 지방정부를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투자기금의 설치,
- 둘째,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반 사업,
- 셋째,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의한 최신 등기부의 작성,
- 넷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 다섯째,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및 현장실습교육의 지원²²⁾.

3. 人類의 共同對處方案

(1) 海洋, 宇宙, 南極地域 등 共有資產의 管理

종래의 국가주권의 개념으로써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자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海洋, 宇宙, 그리고 南極(Antarctica)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데 애로사

21) WCED(1987), p. 17.

22) WCED(1987), p. 256.

항이 없었던 것도 아니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분야에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져 왔다.

우선, 유엔 海洋法會議(The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는 해양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가지는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가장 의욕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海洋法條約(Law of the Sea Treaty)에 대한 비준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어족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서 漁撈協定의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에 유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관련 협약들도 강화되어야 한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行星體制를 관찰하고 通信衛星을 이용하기 위한 한정된 궤도 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에서, 혹은 우주공간의 쓰레기를 규제할 필요에서 우주공간의 관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 고조되어 왔다. 특히 우주공간상에 전략무기를 설치하여 이를 시험하거나 궤도비행시키는 행위가 우주쓰레기의 문제를 야기시켜 온 것이다. 세계의 여러 협력체들은 宇宙空間이 모두의 이익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宇宙空間의 관리원칙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南極은 1959년의 南極協約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협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협력체제가 비당사국들의 극지역 관리나 보호대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WCED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과학조사를 위한 협력을 증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조사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의회원국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²³⁾ 협약당사국들도 모든 국가의 정치인, 과학자, 환경보호론자 및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여 폭넓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협약당사국들이 UN 산하기관 및 UN 외부의 주요 국제기관과의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다.²⁴⁾ 南極의 방대한 자원을 관리하는 데는 진정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서만 南極이 평화적인 국제협력과

23) WCED(1987), p. 283.

24) WCED(1987), pp. 285~6.

환경보호의 상징으로 존속될 수 있게 할 것이다.²⁵⁾

(2) 갈등, 분쟁과 環境被害

環境被害를 줄 수 있는 위험스러운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시 核戰爭의 가능성이다. 평화와 安保에 관한 여러 측면이 持續可能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 주권에 미치는 정치적, 군사적 위협으로서 이해되어온 安保의 개념은 국지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점증되고 있는 환경파괴에 따른 위협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에 따른 혼란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안정을 얻기 위해 군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빙곤을 추방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각각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대량살상과 대량파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강대국들간의 관계증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열강들의 관계증진을 통해서 環境에 惡影響을 줄 수 있는 무기를 포함한 대량 파괴적인 무기를 – 핵무기거나 비핵무기거나 – 시험하고 개발하는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組織, 制度 및 法令의 개편

이 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조직개편 및 법령개정에 관한 여러가지의 제안과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안들은 다음 여섯가지의 주요 목차로 요약될 수 있다.

(i) 출발점에 대하여(Getting at the Sources)

각국의 정부는 지금부터는 정부의 주요한 각 부서와 경제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각자의 책임하에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발맞추어, 여러 지역협력기구들도 그들의 목표와 활동에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25) WCED(1987), p. 286.

인식이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간에는 국경을 넘어가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협력체제의 구성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모든 주요 국제기구나 기관들도 그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돋워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 상호간의 조정과 협력의 증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UN의 사무총장도 UN기관들이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진척사항을 평가, 분석하고, 충고, 지원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ii) 담당기관에 대하여(Dealing with the Effects))

각국 정부는 환경보호와 자연보호 전담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선진국들에게도 필요한 일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더욱 시급한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구의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이 역시 필요할 것이다.

UNEP도 환경관련 자료, 평가, 보고의 전담기구로서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 및 생태계 보호문제에 대한 개혁과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주역으로서 권한을 강화시키고 기구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iii) 危害可能性에 대한 評價(Assessing Global Risks)

세계 인류의 생존, 안녕, 그리고 번영에 위해가 되고 자연생태계에 들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危害可能性을 파악, 평가하여,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 보완되어야 한다. 각 국 정부는 이를 위해 독자적으로나, 공동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UNEP의 地球監視體制(Earthwatch Program)은 危害性評價를 위한 UN의 중심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危害性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성격을 가지는 미묘한 문제이므로, 지구상의 심각한 위해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평가, 보고할 수 있는 보완기능을 수행할 객관적인 독립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정부기구, 과학연구단체, 그리고 산업체기구들 사이의 협조체제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iv) 民主的 意思決定(Making Informed Choices)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여러가지의 어려운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는 일반대중과 비정부기관, 과학기술단체, 그리고 산업체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원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발계획의 수립, 의사결정, 그리고 사업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와 역할이 명시되고, 또한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v) 法的 手段의 제공(Providing the Legal Means)

각국의 법령이나 관련 국제법규상에 개발에 관련된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하는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은 낙후된 현재의 환경관계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와 미래의 후손들이 건강하고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UN의 통솔하에 環境保全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한 世界宣言 및 이를 위한 차기 국제회의에 대하여 준비하는 한편, 환경과 자연의 관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i) 우리의 未來를 위한 投資(Investing in Our Future)

지난 10년간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投資에 대한 개괄적인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환경보호나 개선에 대한 투자를 계울리 하여 나타난 경제적 및 환경적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도 이따금 발생하는 비참한 홍수나 기아현상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의 재정금융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世界銀行(World Bank)은 이미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에 각 금융기관들도 동참해야 할 것이며, 각 지역의 開發銀行(Development Bank)이나 國際通貨基金(IMF)도 자신들의 사업방향이나 정책방향을 이러한 방향으로 전회시키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더우기, 국제기구지원금 총규모의 약 4배의 지원금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간 경험기구들의 새로운 우선 순위 설정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제 지원금의 액수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 여러국가들이 국제적 共有資產이나 생태계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수익을 이러한 지원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자고 제안할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4. 後續措置를 위한 요청

WCED는 그들의 보고서를 UN총회가 ‘持續可能한 成長에 관한 유엔 計劃(UN Program for Ac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후속조치를 위한 요청’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1992년의 유엔의 ‘環境과 成長을 위한 세계회의’가 그들의 주장대로 世界宣言을 채택하고 새로운 國際 機構를 탄생시키게 될 것인지, 아니면 世界宣言만을 채택하고 그 후속조치는 UNEP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인지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 기존기관들과의 미묘한 관계를 야기시키게 될 우려 및 운영자금의 확보 등 복잡한 사정으로 예견하기 어려우나, 여하간에 이 보고서가 세계에 준 반향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1992년의 세계회의 개최로 벌써 그 영향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끝맺음으로, 세계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들은 21개의 서로 다른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다. 간혹 토의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서로 현저히 다른 배경과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선에서는 의견의 합치를 볼 수 있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안정, 번영, 그리고 생존 그 자체가 바로 이순간에 요구되는 그러한 변혁에 달려 있다는 우리의 확신에는 이론이 없었다.”²⁶⁾

III. WCED報告書의 의의 및 특성 그리고 그에 대한 批判

1. 의의와 特性

Brundtland報告書는 종래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발표되거나 발간되었던 1969

26) WCED(1987), p. 343.

년의 Pearson 보고서, 1972년 로마클럽의 보고서인 ‘成長에의 限界(The Limits to Growth),’ 1980년의 Brandt 보고서, 1981년 미국 카터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던 ‘2000년대(Global 2000)’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상호 비교되거나 평가되고 있는 바, 종래의 보고서들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이를 통해 상호 연관지어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天然資源의 문제, 環境保護의 문제, 經濟成長의 문제, 그리고 軍備競爭問題 등의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인구증가의 문제, 식량문제, 농업문제, 野生種의 멸종, 森林의 황폐화, 토양유실, 사막화, 핵에너지의 안정성, 溫室效果를 야기시키는 대기오염문제, 지구의 溫暖化,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및 海洋, 宇宙, 南極 등 共同資產의 관리에 이르기 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접근을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시도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과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시급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나 예견을 시도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서로 連關되어 있는 까닭에 해결 방안도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다각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라고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 보고서는 특히 貧困(poverty)과 환경문제와의 밀접한 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즉 오늘날의 환경문제라는 것은 제대로 成長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거나, 어떠한 유형의 경제성장에 따라 예기치 못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의 경제개발이 그 기반이 되는 환경자원을 파괴시키게 되고, 환경여건이 악화되면서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惡循環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貧困이라는 현상은 環境惡化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빈곤문제와 세계 각국의 경제력 불균형 문제의 원인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는 시야를 가지지 않고서 세계의 환경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시작이다.²⁷⁾

27) Thijs De La Court(1990), *Beyond Brundtland : Green Development in the 1990s*, New York : New Horizons Press, p. 12.

셋째, 이 보고서는 빈곤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成長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미래에 대한 樂觀的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빈곤과 환경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중점적 강조를 통하여, 환경자원을 관리·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길만이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이를 통해 인류가 더 풍요하고 정의로우며, 안정된 未來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樂觀的으로 전망하고 있다.²⁸⁾ 이러한 입장은 종래 인구증가, 천연자원, 농업, 기술, 자본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여,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한,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결국 인류의 미래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로마클럽의 비관적인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넷째, 이 보고서는 과학적인 증명이나 근거에 기초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보고서라기 보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다분히 政治性이 짙은 決議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의 장미빛 미래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떠한 數理的인 모델이나 論理的 準據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과학적인 판단근거에 의거한 결론이라는 의미보다는 환경문제와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의 문제들에 관한 政治的 解決의 필요성을 세계 각 국에 호소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미사적인 접근방법보다는 巨視的인 접근방법을 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판

이 보고서가 발간된 후, 네델란드의 환경단체들과 평화주의 단체들, 그리고 제3세계의 단체들이 회합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지고, 대응을 위한 약 380여 페이지에 이르는 공식적인 공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Brundtland 보고서의 내용의 조목조목별로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다른 시각을 제시한 ‘Bey-

28) WCED(1987), p. 1.

ond Brundtland' 를 1990년 발간하였는 데, 이 대옹 보고서를 중심으로한 批判的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Brundtland보고서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바람직한 成長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物量爲主의 西歐文化의 우월성에 기초하고 있어, 이러한 개념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유형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가지는 개발도상국에 일률적으로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이다. Brundtland보고서에서 인류에게 주고 있는 희망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것인 바 巨視的 의미에서 무공해이며 효율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도, 그러한 것들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인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계의 모든 조직체들이 서로의 권한을 분배하고, 각기 다른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의 일관성의 유지를 존중, 보호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천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강요되어서는 아니되는, 内部로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이라는 것이다.²⁹⁾

둘째, Brundtland보고서가 주장하고 있는 성장은 절대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빙곤의 추방을 평계삼아 합리화시키는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그나마 그동안 많은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양식있는 대중이 지켜온 환경자원의 기반까지도 훼들리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동안의 세계의 재정·금융기관들이 행해 온 행태를 미루어 볼 때, 그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좌취와 횡포를 부릴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정말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의혹과 불신에 찬 시각이다.³⁰⁾

끝으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rundtland보고서의 희망찬 낙관에는 아무런

29) Thijss De La Court(1990), pp. 7~8.

30) Thijss De La Court(1990), pp. 118~9.

근거가 없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어떤 학자는 이 보고서를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그저 會議案件(agenda)을 읽듯이 하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하였던 것이다.³¹⁾

IV. 우리나라의 立場과 對處方案

우리나라는 Brundtland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成長이라는 개념에 대한 대외적인 입장이 新生工業國(NICS)의 일원이라는 다소 양면적인 성격 때문에 미묘해 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동 보고서가 결국은 성장위주의 개발을 선호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고, 이를 통해서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파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천연자원이 부족해 결국은 산업활동에 필요한 생산원료나 에너지를 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빈곤층방의 가치를 내 건 ‘지속가능한 成長’이라는 것이 해외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개도국의 국토개발사업 등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同報告書가 지적하고 있듯이 종래의 이러한 개발계획들이 환경파괴나 자원고갈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반성하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종래 환경보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수립·시행해온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내의 환경보전을 위해 애써 왔으며, 이를 토대로 세계 각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발계획에의 참여에 필요한 환경인식 및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제시해 두는 것이 이 보고서가 새로운 독립기구로 발전하게 되어 이러한 성장을 위한 開途國의 개발계획에의 참여에 대한 統制나 調整을 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1) R. H. Cassen(1987), “Our Common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V. 64, p. 126.

아울러, 同 報告書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보전을 갈망하는 환경인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거대한 국제적 조류를 타고 전 세계에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同 報告書 내용과 이의 후속조치로서 개최되는 유엔會議의 결과를 통해, 아직도 전근대적인 물량 위주의 단순한 경제성장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開發優位論者들과,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발상에서 環境規制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요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국제적 감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회의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이 보고서의 공동당면문제들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現況을 보고서의 체제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들이나 성과들을 위주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현황 및 그 동안의 인구정책, 보건의료시설 현황, 교육 등 인적자원관리 현황, 식량의 생산 및 소비현황, 에너지의 이용현황, 도시개발 등 국토개발계획 현황 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염두에 두어 작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고서의 제3부에 해당하는 ‘人類의 當面課題’에 관하여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보여온 관심과 참여를 부각시켜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동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각 조목별로 우리 정부가 수행해 온 成果나 實績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사항들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참고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 共有資產(해양, 우주, 극지역)의 관리

우리정부는 그동안 해양법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남극의 과학연구 조사를 위해 世宗基地를 건설, 운영하여 기초과학탐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 통신위성이나 인공위성을 띄우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우주공간 관리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류의 공동자산인 海洋의 공평한 활용에 대한 의지가 魚族資源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특히 부당한 어획량의 제한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자원활용에의 참여가능성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원양어업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주공간에 대한 활용문제에 관한 것도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전되는 인공위성이나 통신위성의 발사 및 관리를 위해 우리의 참여가능성 및 후발주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의 필요성 등을 담보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남극에 과학탐사기구를 건설하여 南極協約當事國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나, 비참여국가들과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전되고 있으며 기존 당사국들의 기득권은 보호하는 원칙이 천명되고 있으므로 중간입장에 서 있는 우리의 권리가 보호되고 양측의 입장대립에 따르는 피해나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자원빈국으로서 이러한 지역의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ii) 분쟁, 갈등과 環境保護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분쟁의 우려가 가장 높은 지역들 중의 하나라는 점을 제시, 이 지역에서의 평화유지가 평화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성일 뿐더러 환경상의 피해에 따른 지구상의 불안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걸프전시의 페르시아만에의 기름방류 및 油井의 파괴에 따른 환경파괴현상을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정책이 대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년전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국토가 파괴되고 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된 십수년의 세월과, 전쟁미망인, 전쟁고아, 그리고 비참한 동족상잔과 같은 비극이 다시 없도록 해야한다는 전제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한 동시가입문제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지지를 요망하는 것도 어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거의 40년동안 인적이 끊어진 채로 보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적인

생태계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남·북한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의 협조체제를 제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i) 組織, 制度 및 法令의 개편

급속한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1980년 환경보호 전담기관으로서의 環境廳을 설치한 이래, 계속 이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 강화하여 오는 것과 더불어 강화되어 왔으며, 1990년에는 점증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보호의식에 발맞추어 環境廳을 環境處로 확대·개편시킴으로써 정부 각 부처의 환경관련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행정을 전담해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은 이 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역국가간의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서,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위한 한국, 일본,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토의를 해 왔으며, 半廢鎖海域(semi-closed sea)인 서해바다의 오염으로부터의 보호필요성을 관계국에게 제의해 온 바, 환경보호를 위한 地域協力體制構築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이를 활성화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環境影響評價制度를 1977년 도입한 이후 계속 그 적용 범위를 넓여 왔으며, 각 개발행위의 근거법령들의 규정들에 환경에 대한 영향과 피해를 사업계획의 입안단계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환경이 개발사업들로 인해 과괴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또한 이러한 영향평가과정에서 住民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절차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危害可能性에 대한 사전 평가 및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진척도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해서, 1963년의 公害防止法, 1977년의 環境保全法으로 발전되어온 환경관련 법령체제를 대폭 개편, 1990년에 기본정책법인 環境政策法을 제정하고 오염분야별로 大氣環境保全法, 驚音振動規制法, 水質環境保全法, 海洋污染防治法, 廢棄物管理法, 有害化學物質管理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환경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환경오염문제에

따를 분쟁을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環境汚染被害紛爭調整法도 제정하였고, 자연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自然環境保護法도 준비가 완료되어 제정절차를 기다리고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법령체계의 구축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환경규제에 經濟的誘導策(economic incentives)의 개념을 도입한 부과금제도를 배출규제기준의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non-compliance penalty) 형태로 1983년 이후 시행하고 있어 오염자부담원칙(PPP)도 부분적으로는 채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